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관한 입법정책적 대응과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관한 입법정책적 대응과제

심우민(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2017. 5. 24.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NARS

동 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와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구 분	내 용
주제 선정	2016. 1. 1.
초고 작성기간	2016. 11. 1. ~ 2015. 12. 14.
초안 검토	과학방송통신팀 김유향 팀장
실무위원회 검토	2016년 12월 27일(화) 오전 10시 - 실무위원: 정성희 사회문화조사실장 김유향, 김 준, 이만우, 유의정 팀장
외부전문가 자문	1. 전문가: 이원태 연구위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2. 요청일: 2017. 1. 4. 3. 답변일: 2017. 1. 11.
간행물 심의위원회 의결	2017년 1월 13일(금) 오후 2시 10분 - 위원장: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 - 위 원: 송대호 경제산업조사실장 정성희 사회문화조사실장 박재유 기획관리관 김영일 정치행정조사심의관

요 약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개인정보 보호법제들은 ‘개인 식별 가능성’을 가지는 정보를 개인정보로 개념정의하고,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전통적 개인정보 보호체계는 최근 정보통신 기술 및 데이터 분석·활용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하여 그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종래 익명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던 정보가 데이터 분석 및 조합 과정을 거치면서 개인 식별 가능성을 가지는 정보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개인 식별 가능성과 익명성의 경계가 모호해진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해석 및 적용 과정에서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가치 창출에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주요 국가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운용 및 개선에 관해 고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부처들은 특정 개인정보의 개인 식별 가능성을 제거하여 당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비식별화 정책을 뒷받침 해주는 각종 가이드라인 및 안내서를 발간해 오고 있으며, 최근 방송통신위원회 및 행정자치부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업무 주요 소관 부처들을 비롯하여 다수의 정부부처들이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공표 및 운영하고 있다.

주요 국가들의 비식별 조치에 관한 제도적 대응방식은 크게 우리나라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통한 대응방식’, 그리고 비식별 조치 관련 사항들을 법률 등에 반영해 나가는 ‘입법조치를 통한 대응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은 「익명화 실천규약」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해석 및 적용상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와 달리, EU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규칙」을 제정하여 비식별 조치의 맥락에서 ‘가명처리’ 개념을 실정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또한 일본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여 ‘익명가공정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주요 국가들의 입법 동향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또는 익명화를 둘러싼 정책적 논란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주요 국가들의 제도적 대응방식과 내용에 견주어 보자면,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통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식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해석 및 집행 관행을 변화시키기 위해 제시한 가이드라인의 법적인 근거가 모호하다. 비식별화 또는 익명화를 통한 개인정보의 활용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어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둘째, 현재의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의 산업적 활용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프라이버시의 실질적인 보장(정보주체의 통제 및 관리 가능성)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으며, 산업적 견지에서도 비식별화 또는 익명화가 실효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 셋째, 비식별화 또는 익명화에 관한 개념정의 및 그 법적효과에 관한 사회적 합의과정이 없는 다소 단시안적이고 편의적인 가이드라인 방식의 접근으로 인하여, 관련 정책 및 입법 논의에 있어 혼선을 유발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또는 익명화 정책은 산업적 진흥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식별 가능성을 가지는 정보의 직접적인 수집 및 활용을 일부 제약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을 부인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따라서 비식별화 또는 익명화 관련 입법정책 추진에 있어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라는 두 목적이 균형 있게 충족될 수 있는 방안들을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진지하게 모색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비식별 조치 등에 관한 해외 주요 국가들의 입법적 논의 결과를 단순히 형식적으로 차용하는 방식, 또는 법집행 실무상의 편의적인 가이드라인 활용방식으로는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환경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힘들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차 례

□ 요약

I. 서론 / 1

II. 한국의 비식별화 정책과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 6

- 1. 개인 식별 가능성과 비식별 조치 6
- 2. 한국의 비식별화 정책 연혁 11
- 3. 국내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비교 13
- 4. 국내 법률안 발의 현황 18
 - 가. 제19대 국회 18
 - 나. 제20대 국회 20

III. 가이드라인을 통한 대응방식 - 영국 / 23

- 1. 영국 「익명화 실천규약」의 제정 배경 및 과정 23
- 2. 영국 「익명화 실천규약」의 주요내용 26

IV. 입법조치를 통한 대응방식 - EU 및 일본 / 31

- 1. EU의 「개인정보 보호규칙」 31
 - 가. 가명처리 31
 - 나. 가명처리의 법적효과 34

2.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법」	35
가. 익명가공정보	35
나. 익명가공정보의 취급상의 의무	37

V. 입법정책적 시사점 / 39

1. 입법정책적 대응방식의 모색	39
2. 가이드라인의 법(률)적 근거의 필요성	40
3. 정보주체의 관리 가능성 및 법적효과의 구체화	42
4. 비식별화 또는 익명화 개념 등에 관한 사회적 합의	44

VI. 결론 / 47

참고문헌

표 차례

[표 1] 각국의 개인정보 개념정의 규정	8
[표 2] 방통위 가이드라인과 부처합동 가이드라인 비교	17

I. 서론

- 최근 빅데이터(Big Data) 분석 등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유용성과 가치를 가지는 정보 산출(산업)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인정보 보호규제가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평가로 인하여, 비식별화(de-identification) 또는 익명화(anonymization)를 통한 개인정보 활용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음¹⁾
-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법제들은 기본적으로 ‘개인 식별 가능성’을 판단 기준으로 하여 개인정보의 개념적 범위를 설정하여 이를 보호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개인 식별 가능성을 제약 또는 제거하는 조치를 ‘비식별화’ 또는 ‘익명화’라고 표현함²⁾
-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EU,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도 빅데이터 등의 산업적 분석 및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착안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에 관한 논의를 진지하게 진행하고 있음³⁾

-
- 1) 심우민,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이슈와 논점』 제724호, 2013. 10. 11; 심우민,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과 입법과제」, 『이슈와 논점』 제866호, 2014. 6. 12. 등 참조.
 - 2) 현재 국내에서는 비식별화, 비식별 조치, 비식별 처리, 그리고 익명화, 익명 조치, 익명 처리 등의 표현이 혼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임.
 - 3) EU는 종전 역내 국가들의 개인정보 보호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6년 4월 27일에 새로운 「개인정보보호규칙」(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and repealing Directive 95/46/EC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최종 확정하였으며, 이는 2018년 5월 25일 시행될 예정임. 미국의 경우에는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Big Data: Seizing Opportunities, Preserving Values*, 2014.5라는 보고서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한 주의를 촉구한 바 있음. 또한 일본은 2015년 9월 9일 「개인정보보호법」(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을 개정하여 2017년 5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 국내외적으로 개인정보 ‘비식별화’ 또는 ‘익명화’, 그리고 그 법적 효과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확고한 개념정의 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 관련 개념의 법적 활용에 있어 상당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비식별화’는 특정 정보로부터 ‘개인 식별 가능성’을 제거하는 조치 및 과정을 의미하며,⁴⁾ 종종 이러한 용어는 ‘익명화’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됨
 - 비식별화라는 용어는 미국 등의 국가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익명화 또는 익명가공이라는 용어는 EU 및 일본 등지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대체적으로 두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 양상임
- 비식별화와 익명화를 구분하는 입장은, ‘익명화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평가되는 정보를, ‘비식별화된 정보’는 상황에 따라 개인정보 해당여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정보를 각각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함⁵⁾
 - 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EU, 일본 등지의 용례를 검토하여, 비식별화와 익명화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음⁶⁾

4) 미국의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and Technology)는 ISO/TS 25237:2008(E) 표준(Health Informatics - Pseudonymization)을 인용하여, 비식별화(de-identification)를 “식별정보 집합과 정보주체 간의 연계성을 제거하는 과정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하고 있음. Simson L. Garfinkel, *De-Identific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and Technology, NIST, 2015.10, 2면.

5) 이은우, 「마케팅 활용 목적 빅데이터 활용과 판매」,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권은희의원실·경실련·진보네트워크센터·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16.9.7. 종래 익명화는 재식별화가 불가능하다는 관점이 전제된 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 비식별화에 관한 미국 NIST의 보고서는 익명화된 정보도 또한 재식별화할 수 있다는 견지에서, 혼돈을 줄 수 있는 익명화라는 단어를 당해 보고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음. Simson L. Garfinkel, 위의 글, 3면.

6) 고훈수·최경진,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처리가 개인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5, 5-9면.

- 비식별화 과정을 거쳐 개인 식별 가능성을 가지지 않게 된 정보들이 빅데이터 등의 활용을 위한 데이터 분석 및 조합 과정에서 재차 개인 식별(재식별화)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는 우려가 발생하고 있어, 개인정보의 비식별화를 통한 활용에 대해서는 상당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비식별화를 통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비식별 조치 등이 이루어진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시장영역의 사업자들이며, 이들은 익명화된 데이터보다는 직접적 마케팅 등을 목적으로 개인 식별 가능한 데이터들을 활용하려고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비식별 조치를 합법적인 것으로 승인하는 데에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음
 - 그러나 이에 대하여, 정부 및 일부 산업계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통한 활용은 현 시점에서 데이터 활용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ICT 산업과 사회적 유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제도적 수단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음
 - 최근 국내에서도 이러한 비식별 조치 등을 둘러싼 정책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데이터 중심사회(Data-Driven Society)⁷⁾에 관한 입법정책 추진에 있어 지속적으로 쟁점화 될 것임
 - 정부는 2016년 6월 30일 정부부처 합동으로(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공표하였음
 - 이 가이드라인 이전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공표된 바 있었는데, 이는 다분히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영역에 한정하고 있는 성격을 가짐
- 7) 데이터 중심사회란 정보통신의 급격한 발전에 기반하여 데이터가 사실상 사회 모든 영역의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게 되는 사회 및 정책 구성의 이상향을 의미함.

- 이와 달리, 부처합동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 관련 부처들이 공동으로 제정 및 공표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부처합동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가장 원론적 차원의 비판은 가이드라인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이 본질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⁸⁾ 및 영업수행의 자유⁹⁾와 같은 헌법적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근거가 결여되어 있다는 주장임¹⁰⁾
 -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이 가이드라인은 실제 개인정보 관련 소송에서 법원 등의 법적 판단기준으로 원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힘든 상황임(가이드라인의 규범력 문제)
-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비식별 조치에 관한 국내외 동향을 비교·검토하여, 향후 지향해야 할 입법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함
-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비식별화 정책의 동향과 현재 정부가 제도적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참조하여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률안들을 검토함

8) 현행 가이드라인에서와 같이 비식별화된 정보를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단순하게 추정하는 경우, 종래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해 보유하고 있던 통제 권한(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형해화될 가능성이 높음.

9) 개인정보 활용에 관하여 사업자들로 하여금 사실상 비식별화 의무를 부과하게 되는 결과를 발생시키는데, 가이드라인상의 비식별화를 통해서도 실질적으로 당초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이는 영업수행의 방식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있음.

10)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을 근거로 한 것임. 즉 동 조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해외 주요 국가들의 입법적 대응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대응상황과의 비교를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통한 대응방식’과 ‘입법조치를 통한 대응방식’을 구분하여 검토하기로 함
 - (가이드라인을 통한 대응방식) 영국 정보보호위원회(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ICO)의 「익명화 실천규약」(Anonymisation: managing data protection code of practice)은 세계적으로 비식별 조치 등에 관한 최초의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 형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대응방식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
 - (입법조치를 통한 대응방식) 최근 제정 및 개정된 EU의 「개인정보 보호 규칙」(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과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법」(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은 비식별 조치 등을 입법적으로 반영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향후 구체적 입법조치에 관한 대응에 있어 다양한 참조점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¹¹⁾
- 이상과 같은 해외 주요 국가들의 사례 검토에 기반하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비식별화와 관련한 입법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언함

11) 미국의 경우에도 비식별화에 관한 법률들이 존재함. 「가족의 교육적 권리 및 프라이버시법」(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에서는 비식별화가 이루어진 학생기록은 별도의 동의 없이 배포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제적·임상적 보건의에 대한 건강정보기술법」(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for Economic and Clinical Health Act)에서는 비식별 조치된 건강정보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 또한 가장 자주 회자되는 「건강정보 이전과 책임에 관한 법률」(Health Information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에 따른 ‘HIPAA 프라이버시 규칙’도 비식별화 조치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법령들은 기본적으로 매우 제한적인 영역, 즉 교육 및 의료(연구) 등에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일반적인 수준의 입법 논의에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서는 별도로 검토하지 않음.

II. 한국의 비식별화 정책과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1. 개인 식별 가능성과 비식별 조치

- 정부 및 일부 산업계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비식별화 문제가 입법정책적 측면에서 논해지고 있는 이유는 비식별화 조치가 이루어진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제¹²⁾의 적용범위에서 제외시켜 관련 정보들의 활용을 증대시켜, 빅데이터 산업 등의 진흥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¹³⁾
- 정부의 비식별화 정책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상 판단의 어려움이 있는 ‘개인 식별 가능성’(“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산업적 측면에서 빅데이터 등의 활용을 원활하게 하자는 의도를 가짐
 - 이러한 비식별화 정책 기초를 정보주체(서비스 이용자)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이해해 보자면, 기업들로 하여금 비식별화 조치를 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여지를 줄여 개인정보 보호의 수준을 제고한다는 취지로도 볼 수 있음
 - 그러나 당초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법률)에는 “비식별화”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빅데이터 활용 기업의 입장에서는 ‘법률의 개정이 없는 이상’ 개인 식별 가능성 또는 우려가 있는 정보를 이용자의 동

12) 일반법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으며, 특별법으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등 다수의 법률들이 존재함.

13) 예를 들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에도 프라이버시 침해 없이 데이터 유통 및 활용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전문기관을 통해 기업 등의 비식별화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음. 관계부처 합동,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안)」, 2015.12, 22면.

의 없이 활용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과연 데이터의 원활한 활용이 촉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음

□ 국내외적으로 일반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제들은 ‘개인 식별 가능성’을 개인정보 해당여부 판단의 핵심 준거기준으로 삼고 있는 상황임

○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제들은 특정 정보의 개인 식별 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 개인 식별 가능성을 좀 더 명확히 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¹⁴⁾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함
-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6호: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함
- 「위치정보법」 제2조 제2호: 개인위치정보라 함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함

14) 물론 이와 관련하여 일부 견해들은 현행 법제상 ‘결합 용이성’ 요건이 모호한 판결들을 양산해 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2.23. 선고 2010고단 5343 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8.9. 선고 2013고단17 판결 등. 그러나 이는 입법의 문제라기보다는 법 적용 실무상의 문제일 뿐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음.

- 또한 다른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법제들의 경우에도, 개인 식별 가능성을 가지는 정보를 개인정보로 개념정의하고 있음

[표 1] 각국의 개인정보 개념정의 규정

국가	법명	내용
영국	「정보보호법」 Data Protection Act 1998	제1조 (중략) 개인정보란 다음으로부터 식별될 수 있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의미한다. (a) 살아있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b) 살아있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가능성이 있는 기타 정보 그리고 개인에 관한 의견,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그 밖의 사람들의 개인에 관한 의사표현을 포함한다.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新)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2017년 5월 30일 시행예정)	제2조(정의) ① 이 법률에서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생년월일 및 그 밖의 기술 등[문서, 도화 혹은 전자적 기록 - 전자적 방식(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및 그밖에 사람의 지각에 의해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을 말함. 다음 항 제2호에서도 동일함)으로 작성된 기록을 말함. 제18조 제2항에서도 동일함]에 기재 혹은 기록되거나 또는 음성, 동작 및 그 밖의 방법을 사용하여 표시된 일체의 사항(개인식별부호를 제외함)을 말한다. 이하 동일함에 의해 특정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대조하여 확인[조합]할 수 있고, 그로써 특정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 2. 개인식별부호가 포함된 것 ② 이 법률에서 “개인식별부호”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자, 번호, 기호 및 그 밖의 부호 중 政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특정 개인의 신체의 일부의 특징을 전자계산기의 용도에 이용하기 위하여 변환한 문자, 번호, 기호 및 그 밖의

국가	법명	내용
		부호로서, 당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 2. 개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 혹은 개인에게 판매되는 상품의 구입과 관련하여 할당되거나 또는 개인에게 발행된 카드 및 그 밖의 서류에 기재되거나 혹은 전자적 방식에 의해 기록된 문자, 번호, 기호 및 그 밖의 부호로서, 그 이용자 혹은 구입자 또는 발행을 받은 자마다 달라지도록 할당되거나 또는 기재 혹은 기록됨으로써 특정의 이용자 혹은 구입자 또는 발행을 받은 자를 식별할 수 있는 것
독일	「연방정보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제3조 ① 개인정보란 식별되거나 식별가능한 개인에 관한 인적 물리적 환경에 관한 모든 정보를 말한다.
프랑스	「정보처리·추적 및 자유에 관한 법률」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제2조 신분증 번호 또는 자연인에 관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요소로 직·간접적으로 식별되거나 식별가능한 자연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말한다. 개인이 식별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그 밖의 사람들이 이용 또는 접근가능한 모든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
EU	「정보보호규칙」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제4조(정의) ① ‘개인정보’는 식별되었거나 식별 가능한 자연인(‘정보 주체’)에 관한 정보를 의미한다. 식별 가능한 자연인은 특히 이름, 식별 번호, 위치 정보, 온라인 식별자 같은 식별자를 참조하거나 해당 자연인의 물리적, 생리적, 유전적,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 또는 사회적 정체성에 특정된 하나 또는 여러 요소를 참조하여 직·간접적으로 식별될 수 있는 자연인이다.

- 이러한 주요 국가들의 입법내용은 개인 식별 가능성을 가지지 않는 익명정보는 원칙적으로는 개인정보에 관한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익명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규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일반법적 차원에서는 ‘익명정보’ 또는 ‘익명화’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¹⁵⁾
- 이는 특정 정보의 속성에 있어 ‘식별성’과 ‘익명성’의 경계가 명확했던 전통적인 관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제들이 구성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즉 개인 식별 가능성 등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다소 소박한 관념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 및 빅데이터 분석 기법 등의 발전으로 식별성과 익명성의 경계가 불명확해져 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데이터 활용시 개인정보 보호법상 규제의 문제를 항상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특정 정보가 처음에는 개인 식별 가능성을 가지지 않았으나(익명성), 다른 데이터와 조합·분석되는 과정에서 개인 식별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
- 이러한 상황에서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항시 자신이 활용 및 공개하는 데이터가 개인 식별 가능성을 가질 수 있게 될 가능성, 즉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하는 상황임

15) 특별법적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에서 “익명화(匿名化)란 개인식별정보를 영구적으로 삭제하거나, 개인식별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기관의 고유식별기호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한국의 비식별화 정책 연혁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제들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등이 존재함
- 형식적 차원에서 보자면 행정자치부 소관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규범적 일반기준으로서 의미를 가지지만, 실질적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짐
- 현재 사회에서 상당수의 개인정보보호 사안은 인터넷 등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 활용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이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우선하여 특별법으로서 적용됨
- 특히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 중 「위치정보법」은 (개인)위치정보에 한정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터넷상에서의 개인정보 활용에 있어서는 「정보통신망법」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함
- 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2014.12.23)
 - 방송통신위원회는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규제가 산업 진흥에 있어 일종의 부당한 장애요인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2014년 12월 23일 확정·공표한 바 있음
 - 이 가이드라인은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공히 적용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가이드라인의 확정·공표 주체가 방송통신위원회일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라는 법문을 사용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근거 법률은 방송통신위원

회 소관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할 수 있음

- ◆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라는 표현 대신에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주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법률) 개선이 아니라 가이드라인 방식을 취한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현행법 해석, 즉 개인정보 보호규제의 적용범위 해석에 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데 착안한 것으로 보임
- 실제 최근 정부부처 등은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법률 제정 또는 개선보다는 다소 추진이 용이한 가이드라인을 우선적으로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공표이후, 유관 부처들도 “비식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 미래창조과학부¹⁶⁾ 행정자치부¹⁷⁾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 내용과 거의 동일한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출간한 바 있음
- 2015년 6월 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핀테크)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을 공표하였으며,¹⁸⁾ 여기에서도 다른 부처들과 유사하게 비식별화 정책기조를 제

16) 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화진흥원·K-ICT 빅데이터센터,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 활용 안내서 (Ver 1.0)』, 2015.5.

17) 행정자치부·한국정보화진흥원,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대한 적정성 자율평가 안내서』, 2014.12.

18) 금융위원회, 「금융권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 2015.6.3. 이후 금융위원회는 개인신용정보를 비식별화 한 경우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16년 4월 20일 입법예고하였음. 그러나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법안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시하였음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2016.6.30) 공포
 - 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은 그 적용범위가 사실상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정보통신망법」)에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제대상 정보도 매우 제한적(공개된 개인정보, 이용내역 정보, 새로이 생성된 정보)이기 때문에, 범 부처 차원의 공통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음
 - 그 결과 2016년 6월 30일 정부부처 합동으로(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 비식별 조치 기준 및 지원·관리체계 안내」가 발간되었음

3. 국내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비교¹⁹⁾

- (법적효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하, 방통위 가이드라인)과 부처합동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하, 부처합동 가이드라인)은 공히 ‘비식별화가 이루어진 정보를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상정하여’ 이러한 정보 활용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상의 동

률안에 대한 의견표명」(결정문), 2016.10.13. 물론 이 사안은 신용정보 이용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비식별 정보 활용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음.

- 19) 이 절의 후반부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향후 부처합동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고 종전 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임. 그러나 어디에도 양 가이드라인의 적용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비식별화 관련 법률안 중에도 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법안도 있어, 양 가이드라인을 비교하면서 내용을 설명하기로 함.

의요건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대상정보) 방통위 가이드라인과 부처합동 가이드라인은 기본적으로 대상 (개인)정보의 범위상의 차이가 있음
 - 방통위 가이드라인은 기본적으로 공개된 개인정보, 이용내역정보, 새로이 생성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정함
 - 공개된 정보: 이용자 및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 공개 대상이나 목적의 제한 없이 합법적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된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가이드라인 제2조 제1호)
 - 이용내역정보: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기록, 인터넷 접속정보, 거래기록 등의 정보(가이드라인 제2조 제2호)
 - 새로이 생성된 정보: 비식별화 조치하여 수집한 공개된 정보 및 이용내역정보를 정보 처리시스템을 통해 조합·분석하여 생성한 새로운 정보(가이드라인 제6조 제1항)
 - 반면, 부처합동 가이드라인은 방통위 가이드라인과는 달리 정보의 종류를 한정하지 않고, “적정하게” 비식별화된 정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함²⁰⁾
- (비식별화 방법) 방통위 가이드라인과 부처합동 가이드라인상 규정되어 있는 비식별화 방법은 거의 동일한 것으로 판단됨
 - 방통위 가이드라인 제2조 제4호에서 “비식별화란 데이터 값 삭제(Data Reduction), 가명처리(Pseudonymization), 총계처리(Aggregation), 범주화(Data

20) 부처합동,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2016.6.30, 57면.

Suppression), 데이터 마스킹(Data Masking)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부처합동 가이드라인도 “정보집합물(데이터 셋)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를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²¹⁾라고 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가명처리, 총계처리, 데이터 삭제, 데이터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²²⁾
 - 부처합동 가이드라인의 내용 중 특이할만한 점은 ‘가명처리’ 기법만 단독으로 활용된 경우에는 충분한 비식별 조치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²³⁾을 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련 정보의 특성과 맥락에 따라 비식별 조치로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보임
- (적정성 평가) 방통위 가이드라인의 경우에는 비식별 조치의 적정성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부처합동 가이드라인의 경우에는 적정성 평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방통위 가이드라인은 비식별 조치 등에 대해 규정만 하고 있을 뿐, 이러한 비식별 조치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부처합동 가이드라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하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단’²⁴⁾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규

21) 부처합동, 위의 글, 3면.

22) 부처합동, 위의 글, 30면.

23) 부처합동, 위의 글, 7면.

24) 평가단은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3명 이상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

정하고 있으나,²⁵⁾ 이는 가이드라인의 규정이기 때문에 법률상 의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음

- 걱정성 평가에 있어 ‘k-익명성’²⁶⁾을 최소한의 평가수단으로 하여, 필요시 추가적인 평가모델(l-다양성²⁷⁾, t-접근성²⁸⁾)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 (사후관리) 방통위 가이드라인의 경우에는 비식별화된 정보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 비교적 단순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부처합동 가이드라인에서는 비식별 정보에 대한 추가적인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음

- 방통위 가이드라인은 비식별 정보의 처리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생성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하거나 비식별화해야 한다고 규정(동 가이드라인 제3조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 단서)하고 있으며, 비식별 조치된 공개된 개인정보 및 이용내역정보를 저장·관리하는 경우에는 1)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 2) 접속기록의 위·변조 방지조치, 3) 악성프로그램 침해 방지조치, 4) 기타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의 보호조치를 이행하도록 함(동 가이드라인 제3조 제2항)
- 반면 부처합동 가이드라인은 1) 비식별 정보 안전조치(관리적·기술적 보호 조치), 2) 재식별 가능성 모니터링, 3) 비식별 정보 제공 및 위탁계약시 준수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위촉)하고, 외부전문가 위촉시 각 분야별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전문가 풀에서 법률 전문가, 비식별조치 기법 전문가를 각 1명 이상 활용하도록 함. 부처합동, 위의 글, 11면.

- 25) 부처합동, 위의 글, 9면.
- 26) 특정인임을 추론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일정 확률수준 이상 비식별 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 27) 특정인 추론이 안 된다고 해도 민감한 정보의 다양성을 높여 추론 가능성을 낮추는 기법을 의미함.
- 28) l-다양성 뿐만 아니라, 민감한 정보의 분포를 낮추어 추론 가능성을 더욱 낮추는 기법을 의미함.

사항, 4) 재식별시 조치요령 등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비식별 정보 안전조치(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해서는 방통위 가이드라인 제3조 제2항에 비하여 더욱 세부적인 내용이 추가된 8가지의 사항들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²⁹⁾
- 이와 더불어, 비식별 정보 제공 및 위탁계약 시 준수사항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는 부분은 비식별 정보의 제3자 제공이 빈번해질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상의 내용들을 개괄적인 표로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음

[표 2] 방통위 가이드라인과 부처합동 가이드라인 비교

	방통위 가이드라인	부처합동 가이드라인
주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대상 영역	민간(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공공민간(개인정보처리자)
대상 정보	공개된 개인정보, 이용내역정보, 새로이 생성된 개인정보	개인정보 일반
비식별화 방법	데이터 값 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	가명처리, 총계처리, 데이터 삭제, 데이터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 ※ 참조: 가명처리 단독으로는 불충분
적정성 평가	없음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단’ 운영
사후관리	재식별화 시 파기 및 비식별화 4가지 보호조치	재식별화 시 파기 및 비식별화 8가지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등

29) ‘관리적 보호조치’로는 ① 비식별 정보파일 관리담당자 지정, ② 비식별 정보파일 대장 관리, ③ 원본정보 관리부서(기관)와 비식별 정보 관리부서(기관) 간 비식별 조치 관련 정보공유 금지, ④ 이용목적 달성시 지체없이 파기, ⑤ 비식별 정보파일 유출시 대응계획 수립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술적 보호조치’로는 ⑥ 비식별 정보파일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및 접근통제, ⑦ 비식별 정보 보관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 관리, ⑧ 악성 코드 방지 등을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운영을 제시하고 있음. 부처합동, 위의 글, 14면.

- 향후 부처합동 가이드라인은 비식별 조치와 관련한 정책적 차원에서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됨
- 실제 부처합동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참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더 이상 종전 방통위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4. 국내 법률안 발의 현황

- 앞서 살펴본 국내의 비식별화 관련 가이드라인들은 본격적으로 이에 관한 입법논의를 촉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가. 제19대 국회

- 제19대 국회에는 비식별 조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5개의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었음
- 이 당시 발의된 상당수 법률안들은 2014년 12월 23일 공포된 방통위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취지들을 반영하고 있는 특징이 있음
- 강은희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932), 2015.2.5.(임기만료폐기)
 - “비식별화”란 데이터 값 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주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고 개념정의 하고 있음
 - 통계·연구, 시장조사, 마케팅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를 통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파기 요건 및 이에 관한 예외 사유를 규정하여,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음

□ 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4162), 2015.3.5.(임기만료폐기)

- 동 법률안은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및 “비식별개인정보” 등의 개념정의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의 의무화 근거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비식별 조치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증도 명시하고 있음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의 법적인 효과에 대하여, 이 법안이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 모호한 측면은 있지만, 비식별 조치가 이루어진 정보는 더 이상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본다는 입장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에 따라 비식별화된 정보는 이용자(정보주체의)의 동의 없이 당해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4166), 2015.3.5.(임기만료폐기)

- 동 법률안은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대한 개념정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가 통계작성, 학술연구, 실태조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를 재가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또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됨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를 비식별화하여 처리하거나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개인 정보가 생성되지 않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강길부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4200), 2015.3.9.(임기만료폐기)

○ 동 법률안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비식별화된 정보가 재식별화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파기 및 비식별 조치를 취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이 법안의 경우에도 비식별화된 정보는 더 이상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비식별화된 정보는 이용자(정보주체의)의 동의 없이 당해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이 가능함

□ 배덕광 의원 대표발의,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6842), 2015.9.14.(임기만료폐기)

○ 이 법률안은 방통위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즉 공개된 개인정보, 이용내역정보, 새로이 생성된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는 비식별화 하는 경우 이용자(정보주체의)의 동의 없이 당해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규정함

나. 제20대 국회

□ 제20대 국회에서는 현재까지 비식별화와 관련한 5개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임

○ 현재까지 방통위 가이드라인 및 부처합동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각각 반영하

고 있는 법률안들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임

- 배덕광 의원 대표발의,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 2016.5.30.
 - 이 법률안은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법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으로, 공개된 개인정보, 이용내역정보, 새로이 생성된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는 비식별화 하는 경우 이용자(정보주체의)의 동의 없이 당해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이은권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60), 2016.9.6.
 - 동 법안은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비식별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비식별화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하거나 추가적인 비식별조치를 하도록 함
 - 이 법률안은 비식별조치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포함한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부처합동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4238), 2016.12.8.
 - 현행법상 비식별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비식별조치를 통하여 생성된 비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 의무 및 위반 시 처벌 조항 등을 신설함으로써,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아닌 법률에 비식별조치를 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이 법률안은 부처합동 가이드라인의 내용들을 일부 반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비식별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비식별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음
- 강길부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4602), 2016.12.26.
 - 비식별화를 통한 빅데이터의 활용 등을 증진하면서도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비식별화’의 정의를 법률에 규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가 생성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하거나 추가적인 비식별화를 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 이 법률안은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법률안과는 달리, 부처합동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개념정의를 수정하여 해석상 논란을 축소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6618), 2017.4.5.
 -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공처리하는 비식별조치를 규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비식별화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하거나 다시 비식별화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 이 법률안도 기본적으로는 부처합동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개념정의를 수정하여 해석상 논란을 방지하려 함

Ⅲ. 가이드라인을 통한 대응방식 - 영국

1. 영국 「익명화 실천규약」의 제정 배경 및 과정

- 영국은 「1984년 정보보호법」(The Data Protection Act 1984)을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1995년 EU의 「개인정보보호지침」(EU Data Protection Directive)³⁰⁾ 제정에 따라 영국에서도 이 지침에 맞추어 정보보호법의 전문을 수정하여 「1998년 정보보호법」(The Data Protection Act 1998, 이하 DPA)이 새롭게 제정되었음³¹⁾
- DPA는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를 규정한 「2000년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2000)의 제정으로 일부 개정되었으며, 이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³²⁾
- DPA는 정보보호에 있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부문에 있어 적용되며,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과 정보주체의 권리 및 데이터 관리자의 의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EU의 「개인정보보호지침」 내용을 반영하고 있음

30)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31) DPA의 정식명칭은 「개인과 관련된 정보의 취득, 유지, 사용, 공개 등의 활동을 포함한 새로운 처리규범의 수립을 위한 법률」(An Act to make new provision for the regulation of the processing of information relating to individuals, including the obtaining, holding, use or disclosure of such information)

32) 예정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Brexit)로 인한 향후 영국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 변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임.

- 영국을 비롯한 EU 국가들에 적용되는 EU 「개인정보보호지침」 입법이유 26은 ‘식별가능한 데이터의 맥락에서의 익명화(rendered anonymous)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이 지침에 따른 정보보호의 원칙은 식별되거나 식별될 수 있는 개인에 적용되어야 하며, ‘개인 식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데이터관리자(controller) 또는 다른 사람이 대상되는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합리적(reasonably)으로 예측되는 모든 수단들을 고려해야 함
 -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은 익명화된 데이터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이때의 익명화는 더 이상 식별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실천규약(code of conduct)이 데이터가 익명화되는 방식에 대한 안내서(guidance)의 역할을 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EU 「개인정보보호지침」은 익명화된 데이터는 규제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익명화에 대한 언급은 EU 입법이유에서만 명시되어 있을 뿐, 동 지침의 본문 조항들에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음
 - 다만 EU 「개인정보보호지침」 자체 내에서는 익명화 방식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기준들을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더 자세한 내용들은 EU 회원국들에게 실천규약(code of conduct)이라는 형식으로 위임하고 있음(동 지침 제27조)
- 결과적으로 EU 역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처리하려던 사업자들은 EU 「개인정보보호지침」에만 의존해서 익명화 방식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더욱이 만일 개별 회원국들이 실천규약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뢰할 수 있는 익명화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할 수 없어 익명화를 통한 데이터의 수집과 처리가 힘든 상황에서, 2012년 영

국이 최초로 익명화에 대한 실천규약³³⁾을 제정한 것임³⁴⁾

- 영국 「익명화 실천규약」은 정보보호위원회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상당기간 동안의 실무적 논의는 물론이고 의견수렴 및 회신 절차를 거치면서 제정되었음
- 정보보호위원회는 「익명화 실천규약」의 초안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에 대해 2012년 5월 31일부터 동년 8월 23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였으며,³⁵⁾ 이 기간동안 기관 및 개인들로부터 수집된 의견들에 대하여, 74건의 회신 업무를 수행하였음
- 이러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결과 실천규약 초안은 실질적으로 다시 쓰여지는 수준으로 변경되었음³⁶⁾

33) ICO, *Anonymisation: managing data protection risk code of practice*, 2012.

34) 참고로, 2012년 영국의 「익명화 실천규약」 제정 이후 ‘EU 정보보호 실무단 29’은 2014년에 의견서를 발표하기도 하였음. ARTICLE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 *Opinion 05/2014 on Anonymisation Techniques*, Adopted on 10 April 2014. 이 의견서는 매우 의미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견해도 존재함. 첫째, 이 의견서는 단순하게 비식별화 기법들을 나열하고 있을 뿐 실제 비식별화 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으로서 활용되기에는 부족함. 둘째, 의견서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수용 가능한 수준의 재식별 위험성이 영(0)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시사하고 있어, 현실을 외면하고 있음. Khaled El Emam & Cecilia Alvarez, “A critical appraisal of the Article 29 Working Party Opinion 05/2014 on data anonymization techniques”, *International Data Privacy Law*, 2014.

35) 정보보호위원회는 익명화 실천규약에 관한 정보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음. <https://ico.org.uk/about-the-ico/consultations/consultation-on-the-draft-anonymisation-code-of-practice> 참조(최종방문일: 2016년 12월 25일). 또한 정보보호위원회는 익명화와 관련한 세미나도 개최해 온 것으로 확인됨. ICO, *Summary of ICO privacy and data anonymisation seminar*(London), 2011.5.30.

36) 이에 대한 요약은 ICO, *Summary of the points raised during the consultation on the draft code*, 2012.11.20. 참고.

2. 영국 「익명화 실천규약」의 주요내용

- 영국 정보보호위원회 「익명화 실천규약」은 일종의 안내서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실천규약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준수했다는 사실을 정보보호위원회가 확인할 경우, 이는 추후 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나 법집행을 할 경우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 규약은 간접적인 영향력을 지니는 가이드라인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³⁷⁾
- 이 실천규약은 개인정보의 이용에 있어 보호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발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익명화를 소개하고 있음
 - 우선 이 규약이 어떤 것이며 왜 등장했고 법적인 지위가 어떠한지(제1장)를 설명하고, 익명화라는 것은 개인정보의 정의와 분리하기 어려운 존재임을 밝힌 후(제2장), 개인정보의 익명화가 개인정보 보호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설명함(제3장)
 - 이를 바탕으로 익명화된 정보를 생산하거나 공개할 때 언제든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제4장)과 공간정보를 개인정보처럼 취급해야 할지를 다룬 후(제5장),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따라서는 공개해도 되는 정보도 인권법 같은 기타 법령에 의해 공개하지 말아야 하는 때가 있음(제6장)을 밝히고 있음
 -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정보의 유형별로 달리 취급될 필요가 있으며(제7장), 정보보호를 위한 거버넌스가 중요하다는 점(제8장) 및 보호와 이

37) 고학수·최경진, 앞의 책, 86-87면. 이하의 영국 「익명화 실천규약」의 주요내용에 관한 설명은 이 보고서를 참조하여, 수정·보완한 내용을 담고 있음.

용의 균형을 위한 연구목적상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적용예외(제9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제1장) DPA는 정보주체가 더 이상 식별되지 않는 방법으로 익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데이터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개인정보의 익명화는 가능하며 오늘날 현대사회가 직면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수요를 프라이버시 친화적인 방식으로 충족시킬 수 있음
 - 이 장에서는 총계화된 정보 산출 등에 사용되는 ‘익명화 기술’과 익명화 정보를 산출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개인적 수준을 근간으로 하는 ‘가명처리’와 같은 방식을 이 규약이 분명히 구분하는 입장임을 밝히고 있음³⁸⁾
 - 이 규약은 기본적으로 ‘가명처리’ 등과 같은 방식은 (반드시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중대한 프라이버시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 (제2장) 익명화를 이해하는 것은 개인정보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그 자체 보다는 익명화된 데이터를 이용하거나 공개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며, 현실적으로는 DPA를 위반하지 않고 익명화된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은 가능함
 - 이 장은 익명처리된 정보의 공개 시기 및 방법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음을 설명하면서,³⁹⁾ 정보를 공개하는 원인은 정보 공개 방법에 영향을 주는데, 이는 식별 위험과 그에 따른 결과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함
 - 정보 열람의 자유(freedom of information)나 열린 정부 라이선스(open government license)에 따른 정보 공개는 공개 대상이 더 넓고, 이에 비례하

38) ICO, *Anonymisation: managing data protection risk code of practice*, 2012, 7면.

39) ICO, 위의 글, 17면.

여 더 많은 위험을 수반한다고 보고 있음

- 연구 목적이거나 상업적 이익을 위한 임의 공개(discretionary disclosures)는 통제하고 평가하기 쉽지만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함

□ (제3장) 절대적이고 확실하게 재식별 위험을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개별 사안의 상황에 따라 주의 깊게 판단해야 하는 경계선상 사례들이 다수 존재하는데, 만일 어떤 주체가 재식별 절차를 통해 개인정보를 생성하게 된다면 그 주체는 정보관리자(data controller)로서의 책임을 지게 됨

- 이 장은 특정 개인에게 손해, 고통 또는 금전적 피해 등에 이르게 하는 경우와 같이 재식별 결과의 위험성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경계선상 사례에 있어, 익명화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정보 공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설명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위험 분석 및 익명화에 관해 보다 엄격한 형식을 채택해야 취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⁴⁰⁾

- 또한 이 규약은 재식별 위험성 판단 기준으로 ‘의도된 공격자(motivated intruder)’ 기준을 도입하고 있는데,⁴¹⁾ 이는 재식별의 위험성과 관련된 현실적인 메커니즘을 고려하여 ‘정보유형에 따른 정보공개 결과물’과 연계된 잠재적인 공격자의 의도를 고려한 관리적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재식별 가능성 기준이 무한대로 확장되는 것을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평가받고 있음⁴²⁾

40) ICO, 위의 글, 2012, 20면.

41) ICO, 위의 글, 24면.

42) 고학수·최경진, 앞의 책, 91-92면. 기본적으로 이 기준은 재식별을 시도할 의도가 있는 잠재적인 공격자가 재식별에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는데, 여기에서의 공격자는 사전적인 정보 또는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를 원하는 행위자를 의미함. 고학수·최경진, 앞의 책, 92면.

- (제4장) 동의는 익명화 절차를 적법화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필요하지는 않으며, 심지어 정보주체로부터의 동의를 획득할 수 있는 경우에도 여전히 익명화된 데이터를 이용하거나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욱 안전함⁴³⁾
- 정보주체는 자신의 정보가 연구 목적 등을 위하여 익명화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세부적으로 통보받을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기 때문에, 익명화를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들은 이러한 사항들을 그들의 프라이버시 정책(privacy policies)⁴⁴⁾ 및 다른 수단들을 통해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함
- (제5장) DPA에는 우편번호나 GPS 데이터 또는 지도 관련 자료 같은 공간 정보를 다루는 것을 다루는 명확한 규칙이 존재하지 않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공간정보가 개인정보를 구성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장소 또는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개인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 당해 공간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님
- (제6장) DPA의 개인정보 정의는 당해 정보가 어느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는 상황에게까지 연장되어 적용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정보가 아닌 데이터의 경우 이를 항상 공개해도 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정부기관(Public authorities)은 인권법(human rights law)을 준수해야함
- (제7장) 익명화 방식의 차이에 따라 재식별화 위험도 달라질 수 있으며, 제한된 접근은 더욱 광범위한 정보 공개를 가능하게 하는데, 제한된 접근은 강력한 거버넌스(robust governance arrangements)를 전제함

43) 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로부터의 동의를 얻는 것이 매우 어렵고 심지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음.

44)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상의 표현으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고도 볼 수 있음.

- (제8장) 개인정보를 익명화하려는 조직들은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거버넌스 구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보보호위원회는 만일 신고(complaint)를 받게 되거나 감사(audit)를 수행해야 할 때 개인정보를 익명화하려는 조직들의 거버넌스를 검토하게 될 것임⁴⁵⁾
- (제9장) DPA상 연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예외적 허용 조항들은 연구자들에게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유용한 성격을 가지는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연구자들은 여전히 대부분의 DPA 규정뿐만 아니라 그 원칙들을 준수해야 함

45) 개인정보를 익명화하려는 조직들은 상당한 수준(senior-level oversight)의 거버넌스를 확보해야 함.

IV. 입법조치를 통한 대응방식 - EU 및 일본

1. EU의 「개인정보 보호규칙」

가. 가명처리

- 당초 EU의 「개인정보 보호규칙」(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⁴⁶⁾ 입법 과정에 있어서는 가명정보(pseudonymous data)에 대한 개념정의 규정을 두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가명처리(pseudonymisation)에 관해서만 개념정의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 종전 EU 의회 논의과정 중에는 GDPR에 ‘가명정보’라는 개념은 명시적으로 개인정보의 일종으로 표현되어 있었음
- GDPR 입법이유 부분에서는 이러한 가명처리에 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을 기술하고 있음
- 이에 따르면, 분명히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또한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와 익명정보의 중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기술적 상황 등 맥락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고 있음

(26) 정보 보호의 원칙은 식별되었거나 식별 가능한 자연인에 관한 모든 정보에 적용되어야 한다. 가명화를 거친 개인정보는, 추가 정보를 사용하여 해당 자연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식별 가능한 자연인에 관한 정보로 간주되어야 한다. 자연인이 식별

46) 이제까지 EU의 개인정보 보호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해 오던 EU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적용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보다 강행력을 가지는 규칙(regulation)으로서 새롭게 GDPR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음.

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연인을 직간접적으로 식별하기 위해 정보 관리자나 다른 사람에 의해 사용될 합리적 가능성이 있는 정보 분리 등 모든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 어떤 수단이 자연인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될 합리적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처리 시점에 이용 가능한 기술과 기술 발전을 감안하여 식별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 등 모든 객관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정보 보호의 원칙은 익명 정보, 즉 식별되었거나 식별 가능한 자연인에 관한 것이 아닌 정보나 정보 주체가 더 이상 식별 가능하지 않은 방식으로 익명 처리된 개인정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규정은 통계 또는 연구 목적을 포함한 그러한 익명 정보의 처리와는 관련이 없다.

- (28) 개인정보에 가명화를 적용하면 해당 정보 주체에게 미치는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정보 관리자 또는 처리자가 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 **본 규정에서 ‘가명화’를 명시적으로 도입한다고 해서 다른 정보 보호 조치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 (29) 개인정보 처리 시 가명화 적용을 장려하기 위해, 정보 관리자가 관련 처리에서 **본 규정이 이행되고 개인정보의 정보 주체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정보가 별도로 관리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직적 조치를 취한 경우, 일반적 분석은 허용하되 동일 관리자 내에서 가명화 조치가 가능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 관리자는 동일 관리자 내에서 허가된 사람을 지정해야 한다.

□ 이상의 내용상, GDPR의 가명처리 개념은 우리나라에서 비식별화 조치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명처리 개념과 법적 효과의 측면에서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가명처리 정보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추가 정보는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가명처리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여 개인 정보 보호법제의 적용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로 일부(정보 접근, 수정, 삭제 및 이동)에 대해서만 적용이 면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GDPR상의 가명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 보호 관련 규정

- 이하의 규정들은 정보주체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가명처리가 명시된 규정들이라고 할 수 있음
- 제4조 개념정의 규정에서 파악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가명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정보를 개인정보(personal data)로 보고, 단지 특정 정보주체와의 연결성만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⁴⁷⁾

제4조(정의) (5) ‘가명화’는 추가 정보를 사용하지 않으면 개인정보가 더는 특정 정보주체와 연결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 그러한 추가 정보는 별도로 관리되어야 하며, 개인정보가 식별되었거나 식별 가능한 자연인과 연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술적, 조직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관련 규정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개인정보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가명처리를 암호화와 동등한 수준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인정하고 있음
 - 동 규정 제6조(처리의 합법성)의 제4항 (e)목에 의하면, 가명처리와 같은 적절한 보호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동의에 기반하지 않고 수집 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당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적절한 보호조치에 가명처리의 방법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 의미(which may include encryption or pseudonymisation)이며, 결국 그 적절성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47) 참고로, 이는 EU GDPR과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개인정보’ 개념정의 규정의 미세한 차이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EU GDPR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를 자연인 또는 정보주체와 관련한 모든(any) 정보로 정의하고, 정보주체를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직간접적으로 식별될 수 있는 자연인으로 정의하고 있음.

-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동 규정 제25조(설계에 의한 정보 보호와 기본설정에 의한 정보 보호), 제32조(처리 보안), 제89조(공익을 위한 자료 보관 목적, 과학 또는 역사 연구 목적이거나 통계 목적을 위한 처리와 관련한 보호장치 및 적용 완화) 등도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가명처리를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나. 가명처리의 법적효과

- GDPR상의 가명처리 관련 규정들을 체계적·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개인 정보의 이용, 즉 산업적 측면을 고려하여 일부 규정들의 적용을 조건부로 면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즉 가명처리된 정보와 관련하여 정보주체가 정보관리 또는 처리자에게 식별을 위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이상, GDPR 제11조 규정에 따라 동 규정 제15조~제20조상의 정보주체의 권리⁴⁸⁾의 적용이 면제됨
- 이와 같은 GDPR 규정과 현재 우리나라 비식별화 가이드라인(방송통신위원회, 정부부처 합동)은 비식별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당해 정보를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발휘한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GDPR은 가명처리를 조건부로 위 규정들(제15조~제20조)의 적용만을 면제하고 있음
- 결국 GDPR상의 가명처리 관련 규정은 가명정보라는 정보 자체의 속성보다는 특정 정보를 식별 가능성과 연계되지 않도록 처리하는 방식 그

48) 제15조(정보주체의 접근권), 제16조(정보주체의 수정권), 제17조(정보주체의 삭제권), 제18조(정보주체의 처리제한권), 제19조(개인정보 수정 또는 삭제나 처리제한 통지 의무), 제20조(정보주체의 정보 이동성에 대한 권리).

자체에 초점을 두고 가명처리의 법적효력을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특기할 만한 사실은, GDPR 제11조 제2항은 정보 관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목적이 정보 관리자에 의한 정보 주체 식별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된 경우, 정보 관리자는 가능하면 이를 정보 주체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주체의 최소한의 통제 및 관리 가능성(실질적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임
- 특히 정보주체의 식별이 정보 주체가 해당 조항에 따른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추가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접근권, 수정권, 삭제권, 처리제한권 등을 보장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실현에 기여하고 있음

2.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법」

가. 익명가공정보

- 일본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념정의 규정에, “익명가공정보”라는 개념정의 규정을 포함하는 개정을 단행하였음
- 익명가공정보 등에 관한 개정사항들은 현재는 시행되지 않고,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음
- 동법상 “익명가공정보”의 개념정의 조항은 다음과 같음
- 일본의 익명가공정보는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없는 조치가 가해진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념정의 되어 있음

제2조(정의) ⑨ 이 법률에서 “익명가공정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열거된 개인정보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공하여 얻어지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없도록 한 것을 말한다.

1.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 당해 개인정보에 포함되는 기술 등의 일부를 삭제하는 것 (당해 일부의 기술 등을 복원할 수 있는 규칙성을 갖지 않는 방법에 의해 다른 기술 등으로 치환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 당해 개인정보에 포함되는 개인식별부호의 전부를 삭제하는 것 (당해 개인식별부호를 복원할 수 있는 규칙성을 갖지 않는 방법에 의해 다른 기술 등으로 치환하는 것을 포함한다)

⑩ 이 법률에서 “익명가공정보취급사업자”라 함은 익명가공정보를 포함하는 정보의 집합물인면서 특정의 익명가공정보를 전자계산기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제36조 제1항에서 “익명가공정보데이터베이스 등”이라고 한다)을 사업용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5항 각 호에 열거된 자를 제외한다.

- 이상과 같은 일본 「개인정보 보호법」의 태도는 EU GDPR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EU GDPR의 경우에는 “가명처리(pseudonymisation)”에 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명정보(pseudonymous data)”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음
 -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법」의 경우에는 익명가공의 방식을 규정하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한 정보를 ‘익명가공정보’라고 개념정의 하고 있음
 - 이 두 법의 입법태도는 외면적으로는 유사한 것 같지만, EU의 경우에는 관련 정보의 활용 맥락에 따라 그 정보의 속성이 결정되는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특정 방식(형식)의 가공 처리를 거친 경우에는 ‘익명가공정보’가 됨
 - 일본의 입법에 의하면, 경우에 따라 실제 당해 정보가 활용되는 맥락보다는 형식적인 조치 여부를 전제로 정보의 속성이 결정될 수도 있음

나. 익명가공정보의 취급상의 의무

-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익명가공정보에 관한 개념정의와 아울러, 이에 수반되어야 하는 제반 조치의무 등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제36조 제1항은 익명가공정보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재식별 또는 개인정보 복원을 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를 가공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가공방법 등에 관한 정보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동법 제36조 제5항은 익명가공정보와 다른 정보와의 조합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동조 제6항은 기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그 내용의 공표를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익명가공정보의 작성 및 제공에 있어 익명가공정보의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뿐만 아니라, 익명가공정보에 포함되는 개인에 관한 ‘정보의 항목’ 및 ‘그 제공의 방법’에 대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 동법 제36조 제3항은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익명가공정보를 작성한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익명가공정보에 포함되는 개인에 관한 정보의 항목을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4항 또한 익명가공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서도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제37조는 “익명가공정보취급사업자는, 익명가공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익명가공정보에 포함되는 개인에 관한 정보의 항목 및 그 제공

의 방법에 대하여 공표함과 더불어, 당해 제3자에 대해 당해 제공과 관련된 정보가 익명가공정보라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명시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요건 등과 같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현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정보주체가 자기 정보의 통제 및 관리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음

V. 입법정책적 시사점

1. 입법정책적 대응방식의 모색

- 이상에서의 논의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국내외적으로 비식별화 또는 익명화에 관한 입법 논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가이드라인을 통한 대응) 현재의 입법 상황만을 놓고 보자면, 우리나라와 영국의 경우에는 가이드라인 등의 제시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제 운영 및 적용상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입법조치를 통한 대응) EU 및 일본의 경우에는 비식별화 또는 익명화에 대한 고려를 입법적 차원에서 일정부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⁴⁹⁾
- ‘가이드라인을 통한 대응방식’과 ‘입법조치를 통한 대응방식’은 각각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가질 것으로 판단됨
- 가이드라인을 통한 대응방식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적 상황을 시의적절하게 반영해 나갈 수 있는 반면, 그 근거법령 해석상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입법조치를 통한 대응방식은 새로운 기준 설정을 통하여 관련 사안에 있어서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반면,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발생할 수 있음

49) 다만 EU의 경우 명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적용을 면제하는 비식별화 또는 익명화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보기 힘든 측면이 있는데, 특히 비식별 조치의 일환인 가명처리를 이행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personal data)의 일환으로 보는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제도적 차원의 대응방식은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든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비식별화 또는 익명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방향으로 입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종래 개인 식별 가능성과 익명성의 구분이 비교적 명확했던 상황에서는 양자의 구별 기준 등에 관한 입법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개인정보의 개념적 범위 해당여부 판단 문제는 데이터 분석 기술과 데이터 유통의 증가에 따라 더욱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의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관련 규정에 대한 개선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가이드라인을 통한 대응방식을 선택한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법률적 근거를 설정하는 차원의 입법 개선조치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익명화 또는 비식별화된 개인정보의 경우에도, 기술적 수준에 따라서는 다른 데이터와의 조합 및 분석 등을 통하여 개인 식별 가능성을 가지는 정보로 충분히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식별화의 문제는 프라이버시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기본권) 제한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법률 제정을 통한 대응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2. 가이드라인의 법(률)적 근거의 필요성

- 영국 「익명화 실천규약」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법(률)적 근거의 측면에서 차이점을 가짐
- 영국의 「익명화 실천규약」은 EU 「개인정보보호지침」 입법이유 26 및 본문

제27조에 명시적인 위임근거를 가지는 것으로서 그 규범적 근거가 명확하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의 경우에는 이에 관한 법률적 위임이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행정지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정부의 비식별화 정책의 추진 및 이에 따른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등의 공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해외 주요 국가들과 같이 법률 개선을 위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공표된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단선적으로 입법에 반영하고자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 가이드라인은 그 성격상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해석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체계적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단순하게 법률에 반영하게 될 경우 자칫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을 상실한 입법적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우리나라의 가이드라인 제정과정⁵⁰⁾과는 달리, 앞서 언급한 영국 「익명화 실천규약」의 제정과정에서는 사회 각 분야의 의견수렴과 반영절차를 거친 바 있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현재의 데이터 활용에 관한 제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한 토대 위에서, 우리나라 실정과 법체계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가지는 개인정보 소관 부처(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들도 이러한 부분에 관심과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50) 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경우 2013년에 1차례, 2014년에 2차례의 공청회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는 형식적으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공청회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제대로 수용되지는 않았다는 평가가 있음. 또한 부처합동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의 경우 그 제정과정에서 부처간 협의만 있었을 뿐 공청회 등 의견 수렴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3. 정보주체의 관리 가능성 및 법적효과의 구체화

- 우리나라에서 비식별화 가이드라인들은 동의요건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규제 요건들의 적용을 면제시키는 데 초점을 두어 왔으며, 궁극적으로 비식별화된 정보는 개인정보로서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법적효과를 전제로 하고 있음
- 비식별화된 정보가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은 당해 정보의 종전 정보주체가 보유하고 있었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다는 점을 의미하는데, 과연 이것이 현대적 기술 상황과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비식별화 또는 익명화된 정보의 분석 및 활용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인정하더라도, 필요에 따라서는(합리적인 조건하에서) 종전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그러한 비식별화를 통한 분석 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통제 및 관리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특히 외국의 입법례 등을 감안할 때, 특정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또는 익명화를 하더라도 개인정보로서의 속성이 온전히 몰각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정보주체의 자기 정보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 및 관리 가능성(실질적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 즉 자신의 정보가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조건하에 자신의 정보에 대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개인정보에 관한 통제 및 관리 가능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의 입장은 영국의 「익명화 실천규약」은 물론이고, EU 및 일본의 입법례의 입장과 다소 상이한 측면이 있음

- 영국 「익명화 실천규약」은 특정 개인에게 손해, 고통 또는 금전적 피해 등에 이르게 하는 경우와 같이 재식별 결과의 위험성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경계선상 사례에 있어, 익명화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구함과 아울러, 엄격한 익명화 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 또한 영국 「익명화 실천규약」은 일반적으로는 정보주체는 자신의 정보가 연구 목적 등을 위하여 익명화될 것인지 여부에 통보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익명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들은 익명화 관련 사항을 그들의 프라이버시 정책(privacy policies) 및 다른 수단들을 통해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EU GDPR 제11조의 경우에도 정보 관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목적이 정보 관리자에 의한 정보 주체 식별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된 경우 정보관리자는 가능하면 그러한 사실을 정보 주체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일본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및 제37조는 사업자들로 하여금 익명가공정보의 작성 및 제공 등에 관한 정보의 항목 및 그 제공 방법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비식별화를 전제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모든 제약 조건들을 법령 해석상 면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지만(비식별화가 이루어진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 해외 주요 국가들의 가이드라인 및 입법례들은 최소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실현 수단(재식별 결과의 위험성이 높은 개인정보의 익명화 사실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 요구, 익명화 및 그 항목에 대한 고지 및 공표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의 가이드라인이 비식별화가 이루어진 정보를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관련 정보 또는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상의 편의성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이러한 비식별화된 정보를 기업 등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기업이 활용하고자 하는 정보는 종국적으로 특정 정보주체와 연결되어 직접적인 마케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위한 정보라면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제상의 요건(예. 동의요건 등)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수집 및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임⁵¹⁾

4. 비식별화 또는 익명화 개념 등에 관한 사회적 합의

- 비식별화 및 익명화에 관한 개념정의를 아직까지 국내외적으로 확고하게 제시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용어의 개념정의를 물론이고 그 활용에 있어서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영국의 「익명화 실천규약」의 경우에는 비식별화 개념과 유사한 익명화에 관해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EU GDPR은 익명화가 아니라 처리 과정 자체에 초점을 둔 가명처리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에는 ‘익명가공정보’라는 정보개념을 설정하고 있는데, 일본의

51) 추가적으로,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 동의요건이 사실상 면제되기 때문에, 이러한 동의요건 면제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실제 기업 등의 수요를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됨.

‘익명가공정보’ 개념은 다소 모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익명가공정보에 대해 “당해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는 설명을 통하여 매우 강력한 수준의 익명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익명가공 조치’ 방식에 관한 설명에 있어서는 비식별 조치의 가장 미약한 수준인 ‘가명처리’(규칙성을 갖지 않는 방법에 의해 다른 기술 등으로 치환하는 것)를 이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혼선을 주고 있음⁵²⁾
 - 또한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국가 및 공공역역이 아닌 민간영역에서의 산업적 활용을 규율하고 있다는 성격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최근 정부의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및 정책이 제시된 이후, 실제 현장에서는 비식별화 및 익명화 등의 용어들이 혼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기 주장하는 개념정의 및 범주도 상이하어, 실효적이지 못한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갈 수 있는 사회적 담론 형성에 관한 노력이 요청됨
- 물론 이러한 비식별화 또는 익명화와 관련한 개념 설정에 있어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단순한 규제 강화 또는 완화의 선택이 아니라, 현대적인 기술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의 균형에 기여하는 법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여야 할 것임

52) EU에서는 기본적으로 ‘가명처리’를 ‘익명화’ 방식의 일환으로 보고 있지 않음 (ARTICLE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 *Opinion 05/2014 on Anonymisation Techniques*, Adopted on 10 April 2014). 즉 가명처리를 거친 정보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personal data)로서의 성격을 일정부분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 받는다고 볼 수 있음.

- 최신의 데이터 분석기술 등을 활용하면 익명 정보의 경우에도 충분히 개인 식별 가능정보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입법정책적 방향은 개인 식별 가능성을 가지는 정보를 보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 활용간의 조화 및 균형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개인정보 개념, 비식별화 또는 익명화 개념 등은 물론이고, 실질적인 프라이버시 보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예. 프로파일링 금지규정, 프라이버시 중심 설계 규정 등을 통한 제도적 보완)⁵³⁾

53) 이에 대해서는 심우민, 「사물인터넷 개인정보보호의 입법정책」, 『헌법학연구』 제 21권 제2호, 2015, 24면 이하 참조.

VI. 결론

- 최근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술은, 전통적인 개인 정보 보호법제의 원칙적 규정 내용들의 변화를 추동하고 있음
- 특히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들의 조합 및 산출이 가능해지면서 이로 인한 개인정보의 침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제상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은 타당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산업적 이유에서는 물론이고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도 개인정보의 활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단편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음
 - 특히 기술적 발전이 매우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특정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규제의 남발은 사회적 대응비용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이상과 같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라는 견지에서 논해지는 것이 바로 개인정보 비식별화 또는 익명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에서는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전제로 한 정보 활용을 통하여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 및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음
 - 개인정보 활용의 측면에서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가 이루어진 정보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에 비하여 법적 규제를 일부 완화해 줌으로써, 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사회적 편익의 증대를 꾀할 수 있음
- 개인정보 비식별화 정책 등이 논해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가 개인 식별 가능성을 가지는 정보를 대상으로 한 법적 보호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개인 식별 가능성이라는 개인정보 개념정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 국가들도 공통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따라서 개인정보 비식별화 또는 익명화의 문제는 현재 세계적인 개인정보 보호 입법의 화두라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근 부처합동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등을 공표하고, 비식별 조치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활성화와 이를 통한 산업 진흥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한 비식별화 정책 추진은 결국 개인정보 보호법제가 상정하지 못했던 상황에 관해 법 해석 및 적용 실무상의 지침(행정지도)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비식별 조치가 이루어진 정보를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적용을 면제해 주는 내용을 주축으로 하고 있음
- 비식별화 또는 익명화와 관련하여, EU 및 일본 등 주요 국가들에서도 입법 및 관련 규정의 개선 담론 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적 논의에 주목하면서 성급한 입법적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가이드라인 등의 제시는 일정부분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들의 입법적 노력 등에 견주어 보면 다분히 개인정보의 편의주의적인 활용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라는 평가가 가능함
- 비식별화 및 익명화의 입법적 반영방안은 각국이 처한 현실 및 법적 체계에

입각하여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 주요 국가들의 논의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서도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예. 국가적 차원에서 활용되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범용 식별번호 등과의 연계성으로 인한 위험성 증대, 공공 및 민간을 포괄하는 일반법적 개인정보 규제체계 등)

참고문헌

- 고학수·최경진,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처리가 개인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5.
- 관계부처 합동,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안)』, 2015.12.
- 금융위원회, 『금융권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 2015.6.3.
- 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화진흥원·K-ICT 빅데이터센터,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 활용 안내서 (Ver 1.0)』, 2015.5.
- 부처합동,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2016.6.30.
- 심우민,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과 입법과제』, 『이슈와 논점』 제866호, 2014. 6. 12.
- 심우민,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이슈와 논점』 제724호, 2013. 10. 11.
- 심우민, 『사물인터넷 개인정보보호의 입법정책』, 『헌법학연구』 제21권 제2호, 2015.
- 이은우, 『마케팅 활용 목적 빅데이터 활용과 판매』,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권은희의원실·경실련·진보네트워크센터·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16.9.7.
- 행정자치부·한국정보화진흥원,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대한 적정성 자율평가 안내서』, 2014.12.
- ARTICLE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 *Opinion 05/2014 on Anonymisation Techniques*, Adopted on 10 April 2014.
- ICO, *Anonymisation: managing data protection risk code of practice*, 2012.
- ICO, *Summary of ICO privacy and data anonymisation seminar(London)*, 2011.5.30.

ICO, *Summary of the points raised during the consultation on the draft code*, 2012.11.20.

Khaled El Emam & Cecilia Alvarez, “A critical appraisal of the Article 29 Working Party Opinion 05/2014 on data anonymization techniques”, *International Data Privacy Law*, 2014.

Simson L. Garfinkel, *De-Identific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and Technology, 2015.10.

U.S.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Big Data: Seizing Opportunities, Preserving Values*, 201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2.23. 선고 2010고단5343 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8.9. 선고 2013고단17 판결.

국가인권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결정문), 2016.10.13.

ICO 홈페이지(<https://ico.org.uk>)

현안보고서 발간 일람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304호	자금세탁방지지구 국제 기준의 국내 입법 방안: 변호사의 의심거래 보고의무를 중심으로	2017. 5. 2.	정민정
제303호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정책의 개선방안	2017. 1. 31.	이만우 김은표
제302호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저출산 대응정책을 중심으로 -	2017. 1. 26.	박선권
제301호	국내 UHD 서비스 현황과 개선 과제	2016.12.30	최진응
제300호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현황과 개선과제	2016.12.29	조대형
제299호	지방세 비과세 감면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2016.12.28	류영아
제298호	FTA 산업별 수출입 활용률 분석 및 활성화 방안	2016.12.28	정도영 김영찬
제297호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쟁점과 향후과제	2016. 8. 12	임언선
제296호	국회의원 비례대표선거 개방형 명부제의 특징과 시사점	2016. 8. 2.	김종갑
제295호	고령 보훈대상자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2016.6.30.	김성봉
제294호	스마트 그리드 사업의 현황과 개선 과제	2016.6.30.	유재국
제293호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현황과 과제	2016.6.28.	조규범
제291호	제19대 국회 국제법 관련 채택 결의안 현황과 효과성 강화 방안	2016.03.02	정민정 최정인
제290호	박근혜 정부 통일외교의 방향: 서독 빌리 브란트 정부의 '신(新)동방정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2015.12.31.	이승열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289호	로봇산업의 산업연관효과 분석 및 개선방안	2015.12.31.	전은 경
제288호	국방획득체계 현황 및 개선방향	2015.12.30.	김예경 형혁규
제287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쟁점과 개선과제	2015.12.30.	최진응
제286호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현황 및 개선방안	2015.12.30.	김주경
제285호	균형 인구 산정과 정책적 함의	2015.12.24.	유재국
제284호	지역방송의 현황과 개선방향	2015.12.23.	김여라
제283호	국내 영화 온라인 부가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2015.12.17.	김휘정
제282호	공공조달 부정당업자 제재제도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2015.12.10.	김민창 권순조
제281호	외국인 국내 토지소유 관련 제도의 쟁점과 개선 과제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2015.12.9.	이창호
제280호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현황과 과제	2015.12.9.	김 준
제279호	무인항공기 비행안전 제고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2015.12.8.	김송주
제278호	정보저장매체에 관한 압수·수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5.12.3.	박지영
제277호	정보교환을 통한 담합 행위의 효과적인 규제를 위한 개선방안	2015.12.3.	강지원 김애진
제276호	지적재조사사업의 현황과 개선 과제	2015.11.25.	김진수
제275호	의안자동상정제의 입법영향 분석	2015.11.11.	전진영
제274호	리스 및 렌탈 용어와 소비자 보호 관련 쟁점	2015.11.2.	홍정아 최지현
제273호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2015.10.28.	조대형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272호	정부위원회의 현황과 개선방향	2015.9.10.	박영원
제271호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정책의 안정적 운영방안	2015.9.10.	심우민
제270호	재정준칙 정립을 통한 재정규율 강화	2015.9.10.	정도영
제269호	대체거래소(ATS) 설립의 쟁점과 개선방향	2015.9.10.	원종현
제268호	통신감청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15.9.10.	이재일
제267호	재외국민선거제도의 운영현황 및 개선과제	2015.9.10.	임채진 김종갑
제266호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2015.9.10.	장경석
제265호	요양병원 관리·감독 강화 및 제도 개선	2015.9.10.	김주경 김은표 이만우
제264호	산업재해은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방향	2015.9.10.	이혜경
제263호	한국형 전투기 개발 계획: KF-X 사업(보라매사업)	2015.9.10.	형혁규 김예경
제262호	제주 국제학교의 운영 및 관리 실태와 개선방향	2015.9.10.	이덕난 정찬미 유지연
제261호	특별사면권의 남용 문제와 개선방안	2015.8.19.	이혜미
제260호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2015.7.29.	권성훈
제259호	김정일·김정은 후계체제 비교를 통한 김정은 통치리더십 분석	2015.6.25.	이승열
제258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등급판정 보류: 내용, 경과와 권고사항	2015.6.18.	조규범
제257호	산업폐수 배출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2015.6.9.	김경민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256호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위한 법률 개정 과정의 분석과 시사점	2015.6.8.	박 총 렬
제255호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가공업 지원 조례 제정 현황과 개선과제	2015.6.5.	장 영 주
제254호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현황과 개선과제	2015.6.4.	이 창 호
제253호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	2014.12.31.	배 민 식
제252호	해외건설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2014.12.31.	조 주 현
제251호	외국 주요 선박사고 조사와 사후 제도개선의 시사점	2014.12.31.	이 상 팔 배 재 현
제250호	항만분야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적용현황 및 개선방안	2014.12.31.	서 영 재
제249호	학교안전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4.12.31.	조 인 식
제248호	도시 내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른 정책적 과제	2014.12.31.	장 경 석
제247호	교원 명예퇴직 수용률 하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4.12.30.	이 덕 난
제246호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2014.12.26.	한 인 상
제245호	우리나라 연금 체계의 현황과 과제	2014.12.24.	원 종 현
제244호	중소기업 수출지원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4.12.24.	전 은 경
제243호	기존담 채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14.12.24.	김 진 수
제242호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과제	2014.12.23.	권 순 조
제241호	한·중·일 농식품의 상대적 비교우위 분석과 당면 과제	2014.12.19.	최 세 중
제240호	가계부문 에너지 이용실태와 에너지복지정책 방향	2014.11.5.	유 재 국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239호	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법제화의 쟁점과 입법적 개선과제	2014. 9. 11.	김정주
제238호	헌법개정절차의 쟁점과 개선과제	2014. 7. 30.	김선화
제237호	동의의결제도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2014. 7. 28.	이건목
제236호	독일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의 특징 및 2014년 바이에른 지방선거	2014. 7. 22.	김종갑
제235호	항공사고조사제도의 쟁점과 향후 과제	2014.7.15.	김송주
제234호	아이돌봄서비스사업의 현황과 개선방안	2014.7.4.	조주은
제233호	자격시험에서의 공무원 경력인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4.7.2.	김남영
제232호	기술영향평가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2014.6.20.	권성훈
제231호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인계 현황과 향후 과제	2014.6.9.	하혜영
제230호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4.5.27.	김건식
제229호	한류지수의 개선방향과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과제	2014.5.9.	김휘정
제228호	2013 칠레 대선 결과와 시사점	2014.5.2.	김영일 이정진
제227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현황과 입법적 개선과제	2014.3.18.	박영원 이주연
제226호	「공직선거법」 제47조 제3항 및 제4항 국회의원 후보자 여성할당제의 입법영향분석	2014.2.12.	전진영
제225호	2013년 독일 연방하원 선거제도의 개정내용 및 특징	2014.1.27.	김영일 김종갑
제224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 현황과 과제	2013.12.31.	이승현
제223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행위자 대상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입법영향분석	2013.12.31.	조주은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222호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물 관리현황과 향후 과제	2013.12.31.	하혜영
제221호	군 영창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2013.12.31.	형혁규 김선화 김성봉
제220호	재판방송의 쟁점과 과제	2013.12.31.	조규범
제219호	미충족 의료 파악을 위한 미치료율 지표 개선방안	2013.12.31.	김주경
제218호	기초연금 도입 논의와 향후과제	2013.12.31.	원시연
제217호	가계 식품비를 이용한 식품 소비 복지지표의 개발	2013.12.31.	장영주
제216호	의료폐기물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3.12.30.	김경민
제215호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3.12.30.	박주연
제214호	대학평가지표 개선방안 -퍼지 다기준 의사결정법을 이용하여-	2013.12.30.	조주현
제213호	코넥스시장의 현황 및 개선방향	2013.12.30.	김정주
제212호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8조의2(국제빈곤퇴치기여금)의 입법영향 분석	2013.12.27.	유웅조
제211호	주요국의 정치자금 투명성 관리제도	2013.12.26.	이현출 임채진
제210호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의 쟁점과 과제	2013.12.26.	장경석
제209호	「최저임금법」 제6조5항[택시근로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2013.12.26.	한인상
제208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의 현황 및 과제	2013.12.26.	이승현
제207호	국내 영화산업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과제	2013.12.20.	조형근
제206호	수도권 도시철도 요금체계의 문제점과 과제	2013.12.19.	박준환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205호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규정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2013.12.18.	김유향 심우민
제204호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쟁점 및 개선방안	2013.12.18.	조주현 정도영 박준환
제203호	북한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의 특징과 평가	2013.12.17.	김갑식
제202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규제영향분석	2013.11.29	김 준
제201호	천연가스 직도입 확대가 가스 및 전력 시장에 미치는 영향	2013.11.15.	유재국
제200호	남북경협현황과 과제: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2013.11.7.	이승현
제199호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의 주요 쟁점 및 과제	2013.9.26.	이동영
제198호	주요국 의회의 의원에 대한 지원제도	2013.8.21.	김영일 전진영
제197호	법제화 커버드본드의 현황과 정책과제	2013.8.16.	김효연
제196호	핀란드 초·중등 교육제도의 특징 및 시사점	2013.8.5.	이덕난
제195호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의 현황과 개선방향	2013.7.29.	유제범
제194호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현황과 개선 과제 -주택의 건설기관과 관리방안을 중심으로-	2013.7.24.	이창호
제193호	복지사업의 '중복' 및 '편중' 현황과 과제	2013.5.6.	이만우 김영수
제192호	수도권규제관련 해외정책 동향과 과제	2013.4.17.	이창호
제191호	군사법원법상 관할관·심판관제도 개선방안	2013.4.5.	한석현 이재일
제190호	일본 중의원 총선 결과 분석 및 자민당 정권의 주요 정책 전망	2013.3.13.	이현출 김유정
제189호	국가 수자원 조사 선진화 방안	2013.2.28.	이기하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188호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제도 개선방안의 시뮬레이션 분석	2013.2.26.	김종갑
제187호	청년 고용현황과 정책과제	2013.2.20.	박기현
제186호	부가가치세 간이고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13.2.19.	서동국 허원
제185호	김정은 정권 출범의 특징과 향후 전망	2013.1.18.	김갑식
제184호	유아교육·보육과정의 통합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2013.1.15.	전형진
제183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중복 위원회의 설치제한 조항의 입법영향분석	2013.1.14.	박영원
제182호	「국회법」개정안 중 의안자동상정제와 안건신속처리제의 입법영향분석	2013.1.9.	전진영
제181호	「의료법」 및 「약사법」상 리베이트 제재 강화조항의 입법영향 분석	2012.12.31.	김주경
제180호	「아동복지법」상 학대 피해아동 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2.12.31.	이여진
제179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조항의 입법영향분석	2012.12.31.	한인상
제178호	MVNO 활성화 현황과 향후 과제	2012.12.31.	이정윤 이승현
제177호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의 주요쟁점과 과제	2012.12.31.	유의정 이덕난
제176호	저작물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과제	2012.12.31.	조형근
제175호	문화복지의 동향과 문화복지사업의 개선 방향	2012.12.28.	김휘정
제174호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의 주요 쟁점 및 개선방향	2012.12.27.	이덕난 유지연
제173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의 수출효과 분석과 시사점	2012.12.26.	최세중 김봉주
제172호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2012.12.6.	조주현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171호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확대 방안	2012.12.5.	한인상
제17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 특례조항의 입법영향분석	2012.11.23.	김 준
제169호	헌법재판관 공백방지를 위한 입법개선방안	2012.11.13.	김선화
제168호	에너지·환경정책 관련 투자자 ISD 사례연구-바덴팔 대 독일 정부의 경우	2012.11.8.	최준영
제167호	2012 미국대선: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 비교	2012.11.5.	이정진
제166호	「공직선거법」상의 SNS선거규제 조항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2012.10.18.	김유향 심우민
제165호	보건의료 취약계층 건강 보호 정책	2012.10.12.	김주경
제164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법제의 주요 쟁점과 입법과제 : 조정을 중심으로	2012.9.14.	이건묵
제163호	교육지원청 개편 정책의 쟁점 및 개선방안	2012.9.13.	이덕난
제162호	국민연금급여의 국가 지급책임과 연계한 기금운용 개선방향	2012.8.24.	원종현
제161호	선거방송의 쟁점과 개선방안	2012.8.22.	김여라
제160호	한강 수계관리기금 관리정책의 개선방안	2012.8.8.	김경민
제159호	형사조정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선 과제	2012.7.13.	이혜미
제158호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정책 현황과 개선과제	2012.6.25.	조주은
제157호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 운용 현황과 개선 방안	2012.6.15.	유재국
제156호	제18대 국회 입법 활동 분석	2012.6.7.	전진영
제155호	「위치정보보호법」상의 동의규정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2012.5.31.	김유향 심우민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154호	국회 원구성 과정의 특징과 문제점	2012.5.17.	전진영
제153호	실업통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2012.5.14.	박기현
제152호	스마트TV의 현황과 정책과제	2012.5.10.	조희정
제151호	IT 생태계 구조변화에 따른 IT 추진 체계 개편 방향	2012.4.25.	조주현 정도영 유재국 김민지 박영원 조희정 심우민
제150호	경전철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2.4.16.	김형진
제149호	식품산업 산업연관분석과 정책방향	2012.4.6.	장영주 정도영 김봉주
제148호	총액한도대출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2012.3.27.	권순영
제147호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12.3.26.	김종갑
제146호	디지털 환경에서 영상물 유통 규제 개선방안: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를 중심으로	2012.3.23.	조형근
제145호	문화외교와 국제문화교류 부문 정책수행체계의 개선방안	2012.3.13.	김휘정
제144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입법영향분석 - 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	2012.2.21.	원종현
제143호	북핵 일괄타결 협상안과 6자회담: 추진현황과 정책과제	2012.1.25.	이승현

현안보고서 제305호

발 간 일 2017년 5월 24일
발 행 이 내 영
편 집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발 행 처 **국회입법조사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788·4550
인 쇄 경성문화사 (TEL 02·786·2999)

1. 이 책자를 허가 받지 않고 복제하거나 전재해서는 안 됩니다.
 2.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필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문(全文)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www.nars.go.kr>) 'NARS 발간물'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ISSN 2005-3215
발간등록번호 31-9735044-001346-14

© 국회입법조사처, 2017

현안보고서 제305호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관한 입법정책적 대응과제

